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문대림 · 박지원 · 윤준병
 · 어기구 · 임호선 · 주철현
 · 문금주 · 이원택 · 서삼석
 · 임미애 · 송옥주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제80조제1호의”를 “제80조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80조(벌칙) <u>제26조제1항제1호 · 제4호 · 제6호 · 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 · 정지 처분을 위반한-----</u> ----- -----.
1. <u>제26조제1항제1호 · 제4호 · 제6호 · 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 · 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u>	<u><삭 제></u>
2. <u>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삭 제></u>
제81조(과태료) <u><신 설></u>	제81조(과태료) ① <u>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제82조(몰수) ① 제78조, 제79조, <u>제80조제1호의</u>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제82조(몰수) ① ----- - <u>제80조의</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